「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6월 5일, 이은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6월 10일 회부
- O 상정일자: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4년 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 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 법인 지원(안 제4조)
- 관계기관과의 협조(안 제5조)
-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(안 제6조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 - **※** 검토보고서 전문 ······[붙임 1]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-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- 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- 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- 붙임 1.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 - 2.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.

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6. 10.)

「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조례안 개요

○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
○ 제안일자 : 2024. 6. 5.

○ 회부일자 : 2024. 6. 10.

○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○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 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 법인 지원(안 제4조)
- 관계기관과의 협조(안 제5조)
-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○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4조에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, 제34조에서 등록된 범죄피 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○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을 보호 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재정지원 등)에서 군수는 <u>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</u>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6조(홍보 및 교육)에서는 <u>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</u>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<u>자료 제작·보급 및 교육·홍보</u> 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○ 현재 우리 군은 관외에 소재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1)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,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,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[참고]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내역

사 업 명	연 도	사 업 비	
비지하라지 보는 지어되어	2022년	30,000천원	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(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)	2023년	30,000천원	
(김기피에시시전엔디 시전)	2024년	30,000천원	

¹⁾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업무는 영월군에 소재한 '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(평창군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'에서 담당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음

붙임 관계 법령

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-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<u>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</u>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(이하 "등록법인"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예산의</u>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

- 제42조의2(보조금의 교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<u>등록법인에</u>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 - 1.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
 - 2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, 실태조사, 연구, 교육, 홍보 등 <u>범죄피해</u> 자 보호·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
 - 3.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

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이 은 미 의원

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의안 번호 289 발의연월일: 2024년 6월 5일

발 의 자: 이은미 의원

찬 성 자: 심현정, 이창열, 남진삼의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재정지원 등, 관계기관의 협조, 홍보 및 교육(안 제4조 ~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5. 7. ~ 2024. 5. 27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4. 24. ~ 2024. 5. 2.(9일간), 의견 없음.

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-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범죄피해자"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평창군(이하 "군"이 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"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 - 3. "범죄피해자 지원법인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,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.
 -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5조(관계기관의 협조)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에 힘쓰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범죄피해자 보호법

[시행 2017. 3. 14.]

-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<u>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</u>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한다.
- 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- 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교육·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가. 관련조문: 조례안 제4조(제정지원 등)

- 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지급 현황〉

(단위: 천원)

2020	2021	2022	2023	2024	비고
25,000	25,000	30,000	30,000	30,000	

^{※(}사)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(태백시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) 운영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